

지방세환급금 총당 및 지급통지서
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영업소)	

지방세 환급금 내역	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 대상	과오납 연월일	이미 납부한 금액	정상 납부액	① 환급금	② 환급가산금		환급금 합계 (①+②)
									일수	금액	
	지급 이유				계						

총당 내역	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대상	납부할 세액	총당액	총당 후 잔여액
	계						

정산명세	환급금	총당액	총당 후 지급액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위의 지방세환급금을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7조제5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 직인

유의사항

- 지방세환급금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다음 장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이용하여 지급청구 후 수령하십시오.
- 총당 후의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십시오.
-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, 경정 청구서, 지방세 환급청구서,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,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				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				
	주소(영업소)							
환급 방법	[]현금지급	[]계좌이체	금융회사	계좌번호				
지방세 환급금 내역	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대상	환급금	환급가산금	총당액	청구액
	계							

위의 지방세환급금을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(휴대)전화번호

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장 귀하

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(권리자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(별지 제27호서식)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,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,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,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,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,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지방세 환급금 지급 영수증

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대상	①환급금	②환급가산금	③총당액	영수금액 (①+②-③)
계							
환급금		환급가산금		총당액		영수금액	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영수인

(서명 또는 인)